

제43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0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5.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7.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8.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11.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12.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3.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4.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5.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6.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7.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8.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1)

상정된 안건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3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3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3
5.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17
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17
7.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17
8.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17
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7
1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 17
11.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17
12.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7
13.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8
14.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8
15.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8
16.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8
17.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8
18.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18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32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32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32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1) 32

(14시26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 7일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전현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장님 모시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단소송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7)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1)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0)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8)

(14시27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자료입니다.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인영 의원께서는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특별법안의 폐지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한꺼번에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은 제정안만을 발의하였고 부칙에서 현행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용만 의원안은 현행법 폐지 없이 현행법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쪽 생략하고,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연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공식 활동하였으며 2010년 10월까지 청산 업무를 마치고 해

산되었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총 168명으로부터 총 2357필지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고 해당 토지의 시가는 약 21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친일재산이 확인되었지만 귀속되지 못한 토지 등 상당량의 잠재적 환수 대상 재산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활동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현행법 폐지 후 재제정 또는 전부개정 방식 검토입니다.

현행법은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한시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과 제도 집행 기반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발의하신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모두 현행법과 대동소이해서 일부개정 형식을 취해도 무방하지만 폐지 후 재제정 방식 또는 전부개정 방식이 위원회 기능 회복과 법적 명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법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한시법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출한 제정안과 전부개정법률안들이 현행법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단 현행법과 제정안,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0쪽부터는 보다 상세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토대로 한 잠정적인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법무부와 전문위원실이 협의하여 마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쪽, 1. 제명입니다.

제명은 현행법은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인영 의원안은 ‘국가귀속 등’이라고 해서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일 의원안과 김용만 의원안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뿐 아니라 친일재산 처분대가의 국가환수까지 규정하고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인영 의원안과 같이 ‘국가귀속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역시 4쪽의 2. 목적 및 정의입니다.

목적·정의는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 모두 동일하고 검토의견도 현행법과 동일하게 가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고 다만 제삼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강일 의원안과 김용만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친일재산 매각수익의 국가환수까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해석 다툼의 여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강일 의원이나 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친일재산 처분대가 환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대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이라는 문구 대신에 재산의 처분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제3조에 친일재산 처분대가의 국가환수 규정이 신설될 경우 두 제정안 기준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에서도 처분대가 국가환수 및 그 전제가 되는 친일재산 확인에 관한 사항이 체계·자구상 함께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원회 및 위원 관련 규정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현행법과 제정안 등의 다른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김용만 의원안은 국회의 동의 없이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기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인영 의원안과 이강일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은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이인영 의원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강일 의원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하여 역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김용만 의원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입니다.

현행법과 이인영·이강일 의원안은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용만 의원안은 결격사유를 완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분을 더욱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김용만 의원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 업무에 관해서는 친일재산 처분대가 환수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에 처분대가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업무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삭제할 것인지 여부, 위원 중 3인을 국회가 추천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고·궐위 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대통령 승인절차 삭제 여부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결격사유는 입법례를 고려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역시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은,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기간 등은 현행법 규정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수정의견은 잠정적으로 현행법 그대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무처 및 자문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과 다른 제정안,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만 직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형의 선고로 신분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김용만 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위원의 신분을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원의 신분보장은 입법례를 고려하여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이 아니고서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6. 조사의 개시, 이의신청, 조사 결과 통지 및 국가귀속 결정 등입니다.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김용만 의원안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사개시, 이의신청 등은 현행법 제정 이후 제정한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감안하여 체계·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과 결정통지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친일재산 처분대가 환수를 추가하는 경우 친일재산 처분을 위원회 조치대상으로 신설하고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위원회 통지대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7. 국가귀속 재산의 활용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일단 귀속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이인영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은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사용 용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김용만 의원안은 여기에 더해서 독립운동 역사 선양사업에까지 국가귀속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인영·이강일·김용만 의원안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지급주체와 지급요건, 포상금액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귀속재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친일재산 처분대가 환수가 추가됨에 따라 국가환수된 처분대가의 사용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김용만 의원안은 독립운동 역사 선양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현행법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입법례를 고려해서 지급주체는 위원회로, 지급요건 및 포상금액도 이인영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또한 무분별한 신고의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 환수 및 통지절차, 국세채납처분의 예 등이 추가로 마련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역시 8쪽의 8. 벌칙 및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행법과 이인영·이강일·김용만 의원안 역시 내용이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불복절차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감안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는 위원회 구성 등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준비행위 관련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경과조치 관련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고려해서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단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와 기록물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도 2026년 2월 전부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법문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서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은 제명이 수정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법의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실효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국가귀속을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쟁점사항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절차 및 연장 횟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자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법률안 전반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으로, 필요한 경우 각 조문별 논의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이게 2006년에 생겨서 2010년까지 활동을 했었다고 돼 있는데 2006~2010년 운영된 친일반민족위원회의 전체 인원 구성 그리고 4년간 투입된 예산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법안심사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원회 활동의 지속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각주에 보니까 2010년 당시에 이 위원회가 없어질 때 그 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하는 것, 뜻은 좋지요. 뜻은 좋은데, 이게 16년 전에 없어진 위원회를 갑자기 부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국민 여론이 친일재산 환수 안 해 가지고 그런 여론이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필요성이 왜 존재하지?’ 했더니 2010년도의 인터뷰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활동을 안 했던 위원회를 지금에서야 부활시켜서 이것을 또 하자, 물론 뜻은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온갖 위원회를 다 부활시켜 가지고 그냥 끝도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취지만 좋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그렇게 할 정도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한번 조금 쭉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방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을 했고 조직은 2개 단, 2개 실, 7개 과, 107명이었습니다. 4년간 사용한 예산은 총 237억 140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107명 그분들이 다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기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보이고요. 일부는 계약직과 상근직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포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일시 파견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친일반민족위원회 자체에서 근무했던 인원만 그렇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회 자체 구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구성원들 중에 여기에 보면 정무직, 검사, 고공단, 3·4급, 4·5급 등 각 직급별로 있는데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견을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부처에서 얼마나 파견으로 구성되었고 또 선발한 인원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 위원회는, 제가 검사 시절에도 검사들이 여기에 파견을 나갔었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활동기간 동안에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조사해 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공시지가가 959억 원, 지금 현재 시가로 2100억 원 정도를 귀속시켰는데 당시에 이미 친일재산임이 확인됐지만 귀속되지 못한 토지하고 일본인 명의 은닉 토지 등 상당한 친일재산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

는데도 사실은 16년 동안 이 위원회를 다시 재개해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돼서 법무부가 최근에도 승소를 했다면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냐, 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를 가동시켜 가지고 그 당시 확인됐던 친일재산들을 지금이라도 국가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해서 친일재산이 더 있는지도 더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당시에 기한이 4년밖에 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법이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보면 사실 237억을 투입해 가지고 2100억 정도를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조사한 인원만 해도 462명의 친일행위자 그리고 후손 3만 884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해야지 내용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세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매각대금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결국 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친일이라는 이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저는 또 다른 끊임없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확인되었으나 귀속하지 못한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 이미 확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또 그와 관련된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새로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정도 조사했으면 4년 동안 성과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2010년에 활동기한을 종료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거의 준상설처럼 만들고 오히려 포상금의 기준이라든지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는 오히려 우리가 법을 만든다면 ‘확인되었으나’ 하는 부분이 정말 확정이 된 건지, 확정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또다시 친일이나 아니냐를 따지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것은 잘못하면 진짜 과도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계속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코로나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런 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오히려 지금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 저도 관련돼서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나경원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2페이지 맨 마지

막에 친일재산임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 토지, 일본인 명의 은닉 토지 등 잠재적 환수 대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 4년의 활동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활동의 지속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 이것은 김창국 그 당시 재산조사위원장이 법률신문에 인터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조사가 됐고 확인이 됐고 하면 이어서 그때 연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쉬웠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환수한다는 그 명분에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왜 그걸 눈앞에 뻔히 두고도 확인을 했는데 조사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스톱을 했을까요? 그때 이것을 다시 연장 법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왜 그게,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연장이 되지 않았을까. 왜 이제서, 십몇 년이…… 아니지요, 2010년이니까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와 가지고…… 아니, 그전에도 훨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기간을 뒤 가지고 4년이니까 끝 해 가지고 손을 뗐는데 그런 논리로 친다면 왜 여기, 그 안을 보니까 어떤 것은 보면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청산을 해야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계속 나올 때까지 터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제가 알기로는 1기 위원회가 4년간 활동한 이후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됐었는데요. 당시 대통령님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법률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법률안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친일재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등 조사기구가 후손들에게 상속되거나 양도되어 있는 재산 등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 때 활동했던 조사 자료를 토대로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법무부가 다 했습니다만 1기 4년 동안 했던 것들이 모두 완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기구의 추가 출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에서도 작년에 친일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 78억 상당의 소를 제기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약 58억 상당의 토지소

유권에 대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친일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사활동이 수반되어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광복회라든지 관련 단체 등에서는 친일재산으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을 약 1500억 원 규모로 설명하고 계시고 아직 상당히 많은 친일재산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조금만 확인해 보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이기용 친일과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기 위원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추가로 지금 친일재산으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법무부가 그것을 조사할 수 없고 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이런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계받은 자료를 토대로는 후속 조치와 소를 제기해서 반환절차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조사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지막으로 김창국 위원장께서 2010년에 말씀하셨던, 인터뷰했던 것 같은 한테 보면 ‘아직 귀속되지 못한 토지가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 은닉 토지 2946필지 이렇게 잠재적 환수 대상이 남아 있다’라고 검토보고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때 1기에서 조사를 마무리 못 지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를 지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혹시 확인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당시에 마무리 못 지은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여전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끝난 상태지요? 아마 그때 이명박 정부라서,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더 하고 싶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서 급하게 마무리돼서 조사가 못 끝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1기 위원회에서 당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되었고요 1기 위원회에서 찾은 내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온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천군 등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찾아서 소송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차관께서는 확인되지 못하고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사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왜 내용이 다르지요?

아까 24명의 115필지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은닉 토지에 대해서 법안심사자료 2쪽에 보면 ‘확인되었으나 귀속되지 못한’이라고 돼 있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확인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사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 것인가요, 법무부차관? 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토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이게 지금 두 측면이 다 있는데요. 담당 실무 과장께서 설명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나경원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의 질의가 이 내용이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발언대로 나와서 한번 답변 직접 해 주시겠어요?

○**법무부국가소송과장 국진** 법무부 국가소송과장 국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창국 조사위원장 인터뷰 관련해서는 친일재산은 확인됐는데 시간 부족 등으로 귀속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는 분명히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르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 당시 조사위원회에서 다 마무리 못 한 것도 있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의심 재산을 찾아서 소송 요청을 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들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건 지금 추가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틀리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제가 잘못 답변드린……

○**나경원 위원**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시 설치되고 다시 조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저희가……

○**박은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용민**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은 확인됐는데 귀속 못 한 게 한 500억 원, 152억 그다음에 416억. 그리고 아까 차관님께서 1500억 원 정도를 얘기하셨으니까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지금 조사하면 친일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까 1500억 원의……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든 관련 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환수하지 못한 친일재산을 15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와 같이 남아 있는 재산이 많다는 강력한 의견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보니까 여기는 2010년 기준 공시지가 152억, 2010년 기준 공시지가 416억이니까 2026년 시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것들이 조사된 건 지금 없지요, 대략 시가로 어느 정도라는 것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거기까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가 이걸 섞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확인되었으나 환수되지 못한 재산은 저희가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이미 확인의 절차가 끝났다면 법무부가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던 중에 확인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가 지금 그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료를 다 넘겨받고 계신 건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필요성을, 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은 결국 조사의 필요성 부분이 더 인정될 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이 위원회 설치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더라도 이미 그때 했을 때도 이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라면 위원회 설치의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답변한 대로 그 당시에 조사 중이었다가 기간이 종료됐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고 그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고 조사 중이 있는지, 단순히 지금 와서 관련된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답변을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가 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는 친일재산 귀속과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를 인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당시 조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다가 완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차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하신 겁니다. 지금 조사하다가 만 게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조사하다 만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자료는 지금 법무부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까 모두에 무조건 갚이 이것이 필요 있다, 이걸 법무부의 그 자세가 틀린 거지요.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주실 때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아까 지자체에서도 먼저 자진해서 의심되는 재산이라고 신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사권이 없으니까 법무부가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진천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꼭 조사 때문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권 이외에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으로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면으로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사건 등 승계 및 수행을 담당해서 소송으로 환수까지 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삼자 선의취득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수가 안 되지만 처분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같은 것들은 지금 기존 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없지요? 없고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법들에 들어가면서 분쟁을 한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취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입법 내용에 보면 선의취득도 보호하면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국가 귀속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것들도 근거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회의 필요성은 조사 이외에도, 이 법의 필요성은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납득 가능하시게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좀 확인해서 다음번에 논의 한 번 더 하지요.

○조배숙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자꾸 2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AI도 있고 자료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이게 자꾸 2년 단위로 제한도 없이 계속 연장하고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측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은 지금 현행법과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임을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딱 이 부분만, 기간 4 플러스 2.

○곽규택 위원 아니, 법무부는 2 플러스 2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기본이 4년이니까……

○곽규택 위원 4에 플러스 2?

○소위원장 김용민 예, 한 번 딱 연장하는 2년……

○조배숙 위원 현행법대로?

○소위원장 김용민 예, 현행법이 지금 4 플러스 2 규정이거든요.

○조배숙 위원 저는 연장을…… 한 4년 내에 완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연장을 해야 되나요?

○나경원 위원 일단 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조배숙 위원 우선은, 이건 나중의 문제고.

○나경원 위원 자료를 받아 봐요, 조사하다가 중단된 게 얼마나 되는지.

○소위원장 김용민 예, 4 플러스 2에 대해서는 극렬한 반대는 없으신 것 같으니 일단 잠정적으로 그 정도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인정을 안 했어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안 하셨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질의해 보시지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시지.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냥 넘어갔는데……

○조배숙 위원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안 했는지……

○곽규택 위원 20대국회부터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다수당이 민주당이었는데 20대국회부터……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많으셨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서로 성향이 다른데……

○곽규택 위원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승인이 안 됐다 이걸 좀 이상한 논리 같아요. 당시에 승인할 필요가 없었겠지.

○소위원장 김용민 ‘때문에’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더라는 건 팩트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는 팩트만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 사유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는 없고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그때 승인하지 않았던 사유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이것 20대, 21대 때 비슷한 법들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 논의 안 됐었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20대 때는 모르겠고 21대 때는 제가 법사위 1소위원장이 아니어서 처리를 못 했나 봅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법안들은 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필요성이 계속 있었으면.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에 고위 친일파 후손들이 있던데 거기 재산부터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는 않고.

○나경원 위원 민주당에 엄청 고위 친일파 후손이 있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거기에 대해서 제가 1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강력한 의지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경원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한번 받아 보고 위원회 설치 여부를……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차관님, 그때 혹시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에서 그걸 후속으로, 위

원회는 해산하고 법무부에서 전담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됐던 것 아니었던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경위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김기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그런 게 안 돼서 아마 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기 아까 인용하셨던 김창국 위원장님의 인터뷰, 이 부분도 혹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가 가능하시면 배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준비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고.

○**전문위원 최기도** 예.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자료를 좀 보고……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오늘 합의 처리는 어렵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조사 내용, 양 이런 걸 보고 위원회가 진짜 필요한지, 설치가 필요한지,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해도 그게 얼마 정도 활동해야 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중단된 조사자료라든지……

○**소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 번 더 논의하자라는 의견에…… 한 번 더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위원** 당연한 법안을 가지고 미루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한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존중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중단된 사유도 해 와야 되지만 사실상 조사 권한이 없어서 지금 현재 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경우들을 조금 정확히 해 주셔야 조사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다시 법안을 만드는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리해 오십시오.

○**소위원장 김용민** 한 번 더 논의하자는 말씀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것 받아 보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아까 곽규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대·21대에서도 각각 발의됐었고요. 1소위에서 한 번 논의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1소위에서 한 번 논의하고 그냥 폐기?

○**전문위원 최기도** 한 번씩만 논의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때 민주당이 법안소위 1소위원장이었나요, 20대·21대?

- 곽규택 위원 그랬겠지요?
-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 아마 김도읍 위원장 때 아니었을까요?
- 김동아 위원 이상규인가 그분 아니신가요, 이상규?
-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조배숙 위원 그때 김용민 위원님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 김동아 위원 법사위원장이 이상규 아니었나요?
- 소위원장 김용민 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 김동아 위원 여상규, 여상규. 여상규 위원장.
- 나경원 위원 아니, 소위 위원장. 1소위 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 소위원장 김용민 1소위 위원장은 아마 계속 민주당이 했을 거예요, 21대 때는.
-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소위원장이 통과 못 시킨 이유?
- 박은정 위원 전체회의 통과가 안 되는데 1소위 해 봐야 뭐 해요.
- 곽규택 위원 좀 더 논의합시다.
- 나경원 위원 하여간에 조금 더, 우리가 무조건 이것 하자 이것보다는 자세히 따져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규택 위원 환수하면 좋지. 그런데 온갖 위원회를 자꾸 만드려 하니까……
- 박은정 위원 아니, 다음에 통과시켜야 돼요.
-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고 법무부에서 그 부분 오늘 말씀 나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법의 필요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김창국 위원장님의 인터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으니 그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환수만을 위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가 아닌 다른 방법도 한 번 대안으로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용민 예. 조사의 필요성은 사실 있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7.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8.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1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11.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12.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3.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4.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5.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6.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7.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8.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15시09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및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6항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9항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사일정 제10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세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좌석에 14건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안을,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제정안이고 이래서 하나의 의안으로 묶어서 참고로 올려 드렸으니 각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8항까지 집단소송 관련 법안입니다.

14건 법안 중에서 백혜련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법사위의 전체위에 상정돼서 소위로 지금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 12건의 법률안은 직회부된 법률안들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논의배경 및 개념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 집단소송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사 제도와와의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단소송의 도입 필요성입니다. 4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관한 찬반론을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집단소송 관련 법안 총 14건인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 박균택 의원님이 발의하실 안을 법무부가 수용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주로 박균택 의원님 안을 위주로 심사자료를 작성했고 나머지 의원님들 안이 해당되는 부분에는 추가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체계는 총 6개 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을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하여 소송허가단계, 본안소송단계, 분배단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체계와 구성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박균택 의원님 안의 비교입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박균택 의원님 안은 적용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증권 관련 분쟁(열거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박균택 의원님 안은 분야 제한 없는 손해배상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할, 소송대리인, 소송허가요건, 대표당사자, 인지액 상한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소송허가 및 불허가 결정 불복과 관련하여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허가·불허가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균택 의원님 안은 허가·불허가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허가 결정 즉시항고 집행정지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박균택 의원님 안의 차이입니다.

그 외에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 증거조사, 분배절차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참고2에 집단소송 법률안 비교를 표로 만들어 놔습니다.

14건의 의원 발의안을 모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의원님 안들 14건 중에서 12개 안은 집단소송 관련 법률안이고—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이학영 의원님 안과 김남근 의원님 안은 단체소송형 집단소송이어서 법체계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3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4년에 제정돼서 현재 한 20여년 정도 흘렀는데 그사이의 지난 20여년간 집단소송 내역을 참고자료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총칙 부분입니다.

제명 및 목적에 있어 가지고 박균택 의원님 안은 집단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므로 제명이 집단소송법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으로 법무부는 수용의사를 밝혔고 법원행정처도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의, 원고적격 및 적용범위입니다.

집단소송, 총원, 구성원, 대표당사자 등 집단소송의 주요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을 채택하고 그와 관련된 정의 규정을 마련함이 상당

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는 경우 정의 조항의 일부 개념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박균택 의원안은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당사자형 집단소송을 채택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며, 박균택 의원안이 제7조제4항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정의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소 제기 사실 통보 및 공시 규정을 두었는데 해당 내용을 제2조제6호로 이동하고 거래소 이외의 감독기관 등에 대한 소 제기 사실의 통보 및 공시 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도 동일한 수정의견을 밝혀서 뒤에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가 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관련 영역, 개인정보 관련 영역 등을 대상으로 특정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한적 확대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 법 위반행위가 아니더라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확대가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일반적 확대에 해당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제한적 확대는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남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이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다수 피해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집단소송의 파급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적 확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집단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여 소송의 파급력이 크고 구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남소의 여지가 있고 개별 구성원 간의 손해 양상이 상이한 경우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해외 입법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일반적 확대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할 경우 총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관력의 주관적 범위를 두고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기관력의 작동 방식을 제외신고형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일반적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기관 의견은 기관에서 말씀하시게 그냥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이세진 다음, 21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2조(정의) 부분에서 박균택 의원님 안은 제5호까지 나오는데 뒤에 있는 부분을 당겨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정의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수정

의견은 6호 되겠습니다.

그다음 3조는 박균택 의원님 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23페이지 관할 보시겠습니다.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는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의견을 수용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25페이지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정의견은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과 3항에 피고인의 관할법원 소재지가 서울고등법원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이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전문재판부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2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 4조로 되어 있는 것을 1항으로 놓고 2항에서 수정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은 원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송허가 단계에서 소송허가 신청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소송허가제를 도입하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도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박균택 의원님 안은 인지액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통보·공시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옮겨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으로 법무부는 수용하였고 법원행정처도 수정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으로 7조 4항을 넣었습니다. 4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입니다.

소장 등 기재사항(안 제8조 등)입니다.

집단소송의 소장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소를 제기하는 자 및 그 법정대리인, 원고 측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취지 및 원인, 총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소장의 기재사항과 유사하나 소송대리인의 경력 및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8조 2항에서 ‘제1항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입니다.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안 제11조)입니다.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명시하고 남소 방지 및 구성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39페이지, 소송허가 요건입니다.

소송허가 요건(안 제12조), 구성원 50인 이상, 법률상·사실상 쟁점의 공통, 총원의 권리 실현, 이익 보호에 적합한 수단 등이 집단소송의 공통적인 소송허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다수성 요건을 별도로 호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같은 호에서 본문·단서 관계로 규정하는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법무부와 법원 모두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수정의견은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소송허가 절차(안 제13조)입니다.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그 재판은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하며 위 재판에 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수용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송허가 결정 및 불허가 결정입니다.

소송허가 결정 및 불허가 결정(안 제15조·제17조·제27조) 관련 내용입니다.

법원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소송허가 요건을 살펴 소송허가 결정을 하되 총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허가 결정 또는 총원조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 중 총원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47페이지,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에 5항으로 박균택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에 ‘다만, 제4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결 선고 외의 절차만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수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통보(안 제18조·제19조) 관련입니다.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공시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을 옮겨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수정의견은 5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입니다.

19조에서도 일부 수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타 소송허가 단계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을 박균택 의원님 안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실무상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본안소송 단계에서의 주장·증명 관련 특칙입니다.

이 부분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을 옮겨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증거조사제도를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65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67페이지 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도 기록 송부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와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수용하신다고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안에서 하나의 조문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관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기관력의 작동 방식에는 제외신고형과 참가신고형이 있습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박균택 의원님 안은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제외신고형을 수용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72페이지, 기관력의 범위에 대한 입법론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기타 본안소송 단계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7페이지, 분배단계입니다.

단일절차와 복수절차가 있습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박균택 의원님 안은 단일한 재판 이후 분배절차를 거치는 단일절차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79페이지, 분배계획안의 작성 및 인가도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87페이지, 분배실행과 관련한 것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63개 조문 전체 다고, 다음은 위임규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시행규칙, 벌칙 및 부칙입니다.

위임규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95페이지,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부칙 관련입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모두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에서는 박균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자구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제4조(적용례)가 있습니다. 체계·자구 수정의견 4조에 보시면 박균택 의원님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부칙 제4조에 대해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소급해서 3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1안을 보시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고, 제2안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이 법 제정 당시, 2004년 당시에는 부칙 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 규정을 둔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증권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총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같은 방식의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 분야 한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함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남소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허가 규정은 유지하되 절차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은 제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증거조사 방식, 기관력, 분배절차 및 소송비용 등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수 피해자에게 소액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여러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1년간 제기된 사건 수가 총 15건에 불과하고 그중 분배절차까지 완료된 사건은 6건에 그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일반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 제3조도 이미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안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어 소송허가 여부나 기판력 등에서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안에 대해서는 부문별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균택 의원님 안에 적용례 4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박균택 의원님 안에 의하더라도 이 법 시행됐을 때 일단은 시효가 지난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겠지요. 그런 거지요?

○박균택 위원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사실은 법무부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저는 소액이면서 다수 피해자 보호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한다는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항상 새로운 제도를 확장할 때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것인데 향후에 남소 방지와 같은 부작용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잡아서 어떤 부작용이라고 지금은 특정하기 힘들지만 그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이미 끝난 사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급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기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저는 조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박균택 의원님 안은 적용 범위라든지 소급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최대한의 집단소송제를 확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라든지 지금 소비자보호원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서 범위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모든 소비자 관련된 소송으로 다 확대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발생이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에 한정해 가지고 이걸 또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도 다른 피해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든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다 적용한다 그러면 남소의 우려는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직접 기업 쪽의 이야기도 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확대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이 법이 이렇게 급하게 성안이 되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쿠팡 사태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마땅히 국내법으로도 처벌해야 되고요. 또 면죄부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 때려잡자고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불뚱이 누구한테 튈느냐면 중소기업한테 가거든요. 보면 지금 정보 유출로 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게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보니까요,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접수가 2023년에 1277건, 2024년에 1887건, 2025년에 2383건 해서 발생한 게 한 55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5500건 대부분이 쿠팡 같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이런 집단소송에 대한 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과도한 손해배상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려움, 특히 이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이렇게 규제가 강한 법을 자꾸 속도전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나 산업부하고 외교적인 마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소급효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과도한 제재다. 그래서 저도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원래 2005년도에 집단소송에 관련된,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인정이 됐잖아요. 법무부차관님,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에서 소급효 인정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지요. 아니란 말이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하려고 하는지…… 이게 법률이 규제를 하는 것인데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급효를 이 법안에다가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방대한 제정법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깊게 하나하나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합

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것은 자꾸 속도전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속도전 안 하고 공청회까지 열고 천천히 논의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소급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급효를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집단소송법이라는 것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없는 책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접근하는 편의성 또 권리구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잘못을 했고 피해를 줬으면 그것을 변상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소비자들, 국민 일반들이 소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제 능력, 소송 능력, 심리적인 한계 이것을 이용해서 변상을 면하고자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 이게 과연 그렇게 도덕적인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억울한 기업을 만드는 법이 아니고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남의 재산을 또는 남의 인신에 관한 구속 문제나 이런 것들의 형사처벌 문제를, 피해를 줄 때 갑자기 만들어진 제도로 소급해서 없던 죄를 만들고 의무 없는 재산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원래부터 존재하는 권리를 편하게 도모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도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하고 한다면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서 10년 전, 20년 전 문제까지 마치 무슨 역사 바로잡기 소송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멸시효 해당 기간인 3년 전의 사건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부칙에 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까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소급효 금지를 주장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업이 피해를 줬으면 변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그동안 증권 집단소송만 인정되다가 집단소송을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기적으로 이 집단소송에 관한 논의가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단소송이 도입되고 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당장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법이 한꺼번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위원들께서 더 신중하게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지만 역시 소급효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한다는 점, 이런 어떤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법에 있어서의 소급효 금지라는 어떻게 보면 법의 가장 주요한 원칙을 흔들어서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상당한 법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증권 집단소송도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증권 소송에 관한, 집단소송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쿠팡 손봐 주기 위해서 이 법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계속 토론하실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차관님,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급효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소송을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행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참조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책임보험도 가입하고 위기관리방침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단소송법이 생겨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재무적인 손실을 넘어서 경영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법을 제정할 때 환경권이랄지 이런 경제단체 쪽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시지 않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관련 단체들이 부처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저희가 전달받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결국 이미 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권리구제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비용도 크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식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단소송법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이게 무한정 확장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데 지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단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의 기간, 3년의 기간 전에 발생한 범위까지는 집단소송법을 통해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시한을 3년으로 설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뢰의 원칙이거든요, 신뢰의 원칙. 그리고 행위 당시의 법.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법을 만들면. 그런데 이렇게 법의 원칙을, 사실은 원칙인데 그 원칙을 깨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는데 현행 이렇게 하면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어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에 의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의하지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소급해서라도 처벌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급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런 사안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원칙을 깨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원칙을 잘 준수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김동아 위원님.

○나경원 위원 하나만 말씀을……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을 굉장히 오래 하실 게 아니면 공청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토론하시지요.

○박은정 위원 내일 공청회에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김동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동아 위원 너무 반대토론만 하셔 가지고 한번 손 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법 관련해서 통상 문제나 미국과의 대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나가면 다 그런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줄속으로 빨리한다고 하는데 광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규택 위원님이 20년 전 공부할 때부터도 이 법이 논의되었다는데 여태까지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방기한 책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 소급효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자들의 소송절차를 편리하게 해 주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위헌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야 됩니까,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그 소멸시효가 이미 민법상 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좀 더 어떻게 빨리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3년이라는 소급 기한을 두더라도 저는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자면,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또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언제 할 겁니까? 나중에 또 왜 이제 와서 하나, 줄속으로 하나 이런 지난한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야 협조해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쿠팡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법이 소급효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소급효 부분만 없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법무부가 지금 소급효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하고 같이 혼용하는 것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법제도를 혼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손해배상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별로 손해배상 발생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피해자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예컨대 서버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정보 유출 시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부정 결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손해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소급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논리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를 혼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손해배상의 소급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덤석 받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증권에 관한 집단소송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쿠팡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쿠팡 피해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집단소송제도가 이번에 도입되면 가장 먼저 쿠팡의 그 문제가, 저는 이 집단소송제도로 국민들께 뭔가 제도적인 장치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급입법이 지금 법무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되고 그래서 대법원 관례에 따르면 부진

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 사유 사이의 교량 사이에서 형평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도 이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입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는 이 집단소송법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번에 지금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쿠팡 사태부터 해결하는 법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저도 하나만 묻고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소급효냐, 아니냐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없는 청구권을 살려 놓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소송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급효라고 얘기하는, 소급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업이나 당사자들의 절차적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들어온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집단적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재판청구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발생할 일에 국한하지 않고 최소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집단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그러한 공익성,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차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지금 말씀이 나와서 범위와 이 소급효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총원제와 기관력입니다. 총원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허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가 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은 기관력이 모두 미칩니다.

그런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총원을 정하기 위한 허부 결정이 6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총원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법원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지금 소급효 부분에 관해서 현재 개인정보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언론을 토대로 수작업으로 급히 파악한 것만으로도 현재 25만 명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집단소송법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기관력 문제가 충돌이 됩니다, 판결을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드린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8)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2)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6)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1)

(15시56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4건의 법률안 중 3건은 지난 9월에 한 번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안은 그 이후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소위로 직접 회부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전건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교원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전건송치를 일정 요건하에 배제하고 혹시라도 모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또 반대로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원들에게만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게 적절한가 그리고 또 이 경우에 아동보호 사건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육감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불기소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단 현행법상 전건송치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불송치 요건을 교육감이 당연히 뭔가 그 교원의 행위가 적절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건 다 동일한데 사법경찰관이 이것을 무혐의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국 의원안 같은 경우는 불기소 의견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김태선 의원안 같은 경우는 이 불송치 결정 자체를 교육감에게 다시 통지하는 조항을 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형소법처럼 두는 안

이, 최은석 의원안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4건의 취지는 거의 동일한데 범위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지난 회의 이후에 경찰청으로부터 24년도에 사정이 송치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목록을 전달받아서 검찰 사건번호가 확인된 411건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정당’ 의견이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교육감 정당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227건이었고 그중 검찰에서 구약식, 아동보호송치, 기소유예 등 교육감 의견과 달리 처분한 사건은 44건으로 19.4%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정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411건 중 사정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22건 중 검찰이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송치 등 사정 의견과 달리 처분한 사건은 11건으로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사정이 ‘혐의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총 158건인데 그중에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산출된 통계는 24년도 송치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것이 24년 3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약 2년 정도에 그친 상태여서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의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통계만을 기초로 해서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로 삼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사정에서 전부·일부 기소 또는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송치한 189건 중에 기소한 사건은 30건, 기소율 15.9%로 나타났고 그중 교원에게 무죄판결 선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피해를 방지하여 교원의 신속한 지위 안정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각 개정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검찰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 범위가 상이한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검사의 아동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능성이 막혀 피해아동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법무부차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불송치, 그러니까 사경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아동보호 사건 처리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검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핵심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대안으로,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대안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두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종결되지 않고 검사에게—지금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방식이지요—그런 방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처리 사건을 별도의 경로로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대안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장님, 그 법안이 다수 다른 차이가 좀 있기는 합시다만 사경에게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소법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구제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형소법에는 피해자, 고소인까지만 인정이 되어 있고 고발인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들이 가족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법정대리인이 노모이거나 그런 경우에, 즉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성되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틀 등은 지금 형소법에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 틀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때까지 이걸 논의를 멈추자는 말씀이신 건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논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떼어 내서 종결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여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예상컨대, 저도 비슷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인의 이의신청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다 확대하는 것이 아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이 법에서는 별도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다 남겨 두는 것으로 수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이 법에서 남겨 둔다고 하면, 지금 이권 전전송치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전전송치가 아니라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남겨 두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지금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전건송치를 유지했던 취지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아동이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그게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 교사에 의한 침해와 교사 이외에 의한 침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가 아직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 교사는 지금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통해서 경찰의 무혐의 2단계를 거치고 이 2단계를 거쳤을 때 실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교사를 신속하게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지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이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보호 사건의 필요성 등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아동학대를 당하는 대상자는 학생 등, 교사에 비해서 학생의 지위가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상당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초반에 피해자들이 예컨대 피해 불원이라든지 등을 통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차관님 죄송한데요, 최근에 기사와 통계 같은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교사 기사도 나왔고 통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법률에서도 교육감 의견을 존중해서 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건 처리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사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갑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갑을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오히려 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법에서 빨리 그 절차에 의해서 해소를 시켜 주어야 교육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예요.

특히 교사가 장기간 이런 사건에 얽매어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교사 개인에게도 가지만 그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나머지 학생들 전체에 피해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교사이나 교사가 아니냐의 구별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들이 보면 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들이 훨씬 더 많이 신고되고 실제로 처벌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사들께서 부당한 소송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다만 또한 반대로 그중에 아주 극소수이겠습니다만 교원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이 확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에서는 교사께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건송치를 통해서 그러한 피해 구제의 길은 열어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피해자 그다음에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가 되는데 우리 일선 형사부에서 아동학대 고발인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피해자로 확대 인정해 가지고 거의 다 송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무상으로는 그래요. 고발인이 이의 신청권자에서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건송치, 이것 전에 사실상 고발인이 피해자의 지위에 준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의 송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아동학대 외의 다른 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게 전건송치가 과연 필요한가. 그러니까 교사들의 지위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법이 나온 건데 이게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례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무상으로 그것이 송치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피해자 보호만을 내세워 가지고 아동학대 부분만 무조건 전건송치를 해서 교사의 지위를 막 몇 년간 불안정하게 두는 것이 맞는가 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다 전건송치 하는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인정할 것인가는 추후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조금 또, 저는 반대하지만 논의는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법을 그동안 너무 일괄적으로 전건송치 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너무 많은 교사들이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극단적인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 보고 만일에 사각지대 부분이 있다면 실무상 법무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 한 2년 되었는데요, 지금 7일 이내에 교육감이 현장조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 ‘정당’ 의견을 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약 19%가 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와 같이 교육감 의견과 함께 사건의 판단을 근거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동보호 사건 송치와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공소권이 없음’ 경우에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와 같이 사정에 대한 종결권을 주었을 때 아동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종결권을 부여하게 되면 아동보호 사건 송치에 있어서도 여러 지금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건송치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마 오늘 지금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다음번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게 좋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 하나만 더 말씀……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이게 지금 조건이 2개거든요. 사경이 무혐의 판단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 낸 이 두 가지인 경우에 불송치하자는 건데 지금 내신 자료에 따르면 사경 불기소 의견으로 한 사건 중에서 보완수사 요구하고 타관이송 한 6건이 보니까 모두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됐네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두 교집합으로는 기소된 사건은……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교집합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확인되지 않았습니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입장은 이게 도입된 게 2024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건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건 수도 158건에 불과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작동을 한다면 저는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부분은 좀 기우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처리된 안건이 없네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곽규택 김기표 김동아 김용민 김재섭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전현희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